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http://www.daedeok.go.kr

제2024-55호 2024. 8. 30.(금)

차 례

고 시(2)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98호)·····9

공 고(5)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공고 제2024-889호)
 13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4-892호)
 16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시송달 공고(용호천(II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공고 제2024-893호) 18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886호) 22

_ 、					
꼬라					
0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잡: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97호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5-4호(2015.01.16.), 제2015-59호 (2015.07.10.), 제2016-46호(2016.06.30), 제2017-5호(2017.01.25.), 제2018-113호(2018.08.03.), 제2019-74호(2019.06.04.), 제2020-118호(2020.10.30.), 제2021-111호(2021.10.22.), 제2021-127호(2021.11.26.), 제2023-129호 (2023.12.29.), 제2024-16호(2024.02.02.), 제2024-22호(2024.02.13.), 제2024-63호(2024.05.3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계획(변경) 수립・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
-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1)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41일원
 - 2) 면 적 : 154,162.3㎡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1) 공장이전 나대지의 난개발 방지와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택지 공급 및 주변여건과 조화된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 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

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1) 시행자: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대표이사 박성배
- 2)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범천동)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1) 시행기간 : (기정)2015. 01. 16. ~ 2024. 08. 30.

(변경)2015, 01, 16, ~ 2024, 12, 31,

2)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T'8 "I(%)	비 고
계	154,162.3	-	154,162.3	100.0	
주 거 용 지	104,189.3	-	104,189.3	67.6	
공동주택용지	73,763.7	-	73,763.7	47.9	
임대주택용지	30,425.6	-	30,425.6	19.7	
기반시설용지	49,973.0	-	49,973.0	32.4	
공 원	27,492.0	-	27,492.0	17.8	
공 공 공 지	1,149.0	-	1,149.0	0.7	
공 공 청 사	3,044.0	-	3,044.0	2.0	
주 차 장	1,095.0	-	1,095.0	0.7	구역면적의 0.6%이상
도 로	17,193.0	-	17,193.0	11.2	

-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게재 생략
- 아.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이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기반시설계획

자.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1) 공람기간: 고시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2) 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042-608-5104)
- 3) 공람방법: 전화문의, 방문열람 등
- 4) 공람대상: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차.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 분	ca_ma	구역명 위 치			비고		
⊤ स	T = 78			기정	변경	변경후	 - 15
기 정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100-		154,162.3	_	154,162.3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丁ゼ	T = 78	TI	^1	기정	변경	변경후	M 77
기 정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신탄진동 100-		154,162.3	-	154,162.3	

- 3.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Т	世	기정	변경	변경후	T'8 PI(%)	비끄
	합	계	154,162.3	-	154,162.3	100.0	
マコ	소	계	129,659.3	_	129,659.3	84.1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843.0	_	15,843.0	10.3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3,816.3	_	113,816.3	73.8	
녹지	소	계	24,503.0	_	24,503.0	15.9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24,503.0	-	24,503.0	15.9	

4.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0	신탄진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금강-상서동	43,013 (187)	3,000 (23)	양측 8	충고제167호 (1988. 8. 9)	()은 사업지구내
기정	11	대청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신탄진역-대청로변	12,794 (2,342)	825 (293)	양측 8	충고제167호 (1988. 8. 9)	()은 사업지구내

5. 도시 · 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없음)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л н		규	모		-11-	연장	-1 zl	Z-2l	사용	주 요	최초	ul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3	120	28	보조 간선	361	중로 1-217	중로 2 - 53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2	53	15	보조 간선	221	대로 3-120	중로 1-20	일반 도로	석봉 택지	1988.8.8	구역 외
기정	중로	1	304	20~23	집산 도로	341	대로 1-75	대로 3-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09	21	주간선	3,703	대로 3-39	중로 1-20	자동차 전용도로		1997.12.09	구역 외
기정	중로	2	604	15	보조 간선	117	대로 1-2	중로 1-109	일반 도로		1997.02.26	구역 외
기정	중로	1	305	20	집산 도로	44	대로 3-120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2	678	18	집산 도로	155	대로 3-120	중로 3-297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3	295	12	국지 도로	86	중로 1-305	중로 2-678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중로	3	297	12~13	국지 도로	92	신탄진동 82-2	신탄진동 56-4	일반 도로		2020.02.07	
기정	소로	3	신탄진 29	6	국지 도로	52	중로 1-304	신탄진동 456-2	일반 도로		2016.06.30	
기정	소로	3	신탄진 30	6	국지 도로	57	중로 2-678	신탄진동 100-1	일반 도로		2016.06.30	

2)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1			71 71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	주차장	대전광역시 대 신탄진동 83-29번기	 1,095.0	1	1,095.0	2020.02.07	

■ 공간시설

1) 녹지 결정 조서

구も	도면표시	ᅵ시작병	시설의	0) 3]		면적(㎡)			비고
7 1	번 호	기결정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	녹지	완충 녹지	중로1-20-중로2-53 (남한제지 주변)	263.0	-	263.0	1986.09.22	사업 지구외

2) 공원 결정 조서

7 H	도면표시	고이터	시설의	دا دا		면적(㎡)	최초	w =	
구 분	번 호	공원명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정	-	용정	체육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56-26번지 일원	24,273.0	_	24,273.0	2016.06.30	
기 정	-	대청	가로 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398-106번지 일원	3,219.0	_	3,219.0	2016.06.30	

3) 공공공지 결정 조서

7 H	도면표시	기원파	را د ا		면적(m²)		최 초	ul -
구 분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 정	-	공공공지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4번지	974.0	-	974.0	2016.06.30	
기 정	-	공공공지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83-29번지	175.0	-	175.0	2020.02.07	

■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丁亚	번 호		종 류	Ħ ^I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기 정	_	공공청사	_	대전광역시 대덕구	876.0	_	976 A	2016.06.30	
/1 /8		1		신탄진동 100-6번지 일원	670.0		070.0	2010.00.30	
기 정		공공청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911.0	-	911.0	2020.02.07	
/1 /8	_	2	_	신탄진동 100-6번지 일원	911.0			2020.02.01	
기 정	_	공공청사	_	대전광역시 대덕구	913.0	_	013.0	2020.02.07	
/1 /8		3		신탄진동 100-6번지 일원	913.0		913.0	2020.02.01	
기 정		공공청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344.0		2440	2020.02.07	
/1 /8	_	4	_	신탄진동 100-7번지	344.0	-	344.0	2020.02.01	

카. 기타사항

-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지형도면 (S = 1 : 1.200) : 게재생략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 (S = 1 : 1,200) : 게재생략
- 3)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열람 가능(http://eum.go.kr)

- 2.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변경)
- 가. 사업의 명칭: 구)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2030년 대전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구)남한제지 공장이전 나대지의 계획적 주거단지 조성 과 친환경적 택지 공급을 통한 주변 지역들과의 시너지 도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신탄진 부도심 활성화 도모 및 부족 한 기반시설 확보로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00-1번지 일원
- 면 적: 154,162.3 m²
- 라. 시 행 자(변경없음)
- 시행자: ㈜동일스위트 대표이사 박성배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법천동)
- 마. 시행기간(변경): (기정)2015. 01. 16. ~ 2024. 08. 30

(변경)2015. 01. 16. ~ 2024. 12. 31

- 바. 시행방식(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게재 생략
- 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 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해당없음)
- 자.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차.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해당없음)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 카. 관련도면(변경없음): 게재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1/1,200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 1/1,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1/1,200

-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1/1,2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1,200
- 타.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관련 지형도면고시도 : 1/1,200
- 파. 관련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서 (게재생략)
-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042-608-5104)
- 공람대상: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 공람방법: 전화문의 및 방문열람 등.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9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 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O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탄진동 838, 평촌동 554	한절구지로54번길 49(신탄진동)	건물신축	한절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8. 30.
신탄진동 839	한절구지로54번길 47(신탄진동)	건물신축	한절구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8. 30.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85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말소)한 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기간: 2024. 8 30. ~ 2024. 9. 11.(13일간)
- 2.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 용
이용업	해피존	정○길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14번길 9, 6층(송촌동)	사업자등록 폐업 (말소) 2023. 12. 31.	직권말소

4. 고지사항

- 위 공고 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6902.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87호

공인 등록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인 등록 일자: 2024. 8. 30.(금)
- 2. 공인 등록 내역: (등록) 6개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변경일자	사 유
1	공 인	등록	대덕구민원정보고 수 입금 출 납 원 인	,	대학구인한 정보의수입금 출납원인	2024.8.3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2	공 인	등록	대 덕 구 경 제 교 수 입금 출 납 원 인	,	대덕구경제 과수입금 출남원인	2024.8.3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3	공 인	등록	대덕구에너지산업과 수 입 금 출 납 원 인	,	대덕구에너지 산업과수입 금출날원인	2024.8.3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4	공 인	등록	대덕구자원순환고 수 입 금 출 납 원 인	,	대덕구자원 순간과수임 금출남원건	2024.8.30.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අ	변경일자	사 유
5	공 인 .	ド	오 정	광 구 청 동 민 증 <i>기</i>	원 용	훈민 2.9cm			지지다	면 저 저 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2024.8.30.	민원실전용 인증기 추가 구입
6	공 인 -	등록	오 정 (인 ·	동 증 <i>7</i>		훈민 2.1cn			의 지 이	정통이	2024.8.30.	민원실전용 인증기 추가 구입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89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의견청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O 열람기간: 2024년 9월 2일 ~ 9월 23일
- 열람방법: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

□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O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 ~ 9월 23일
- O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O 제 출 처: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O 제출방법: 제출처에 마련된 의견제출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처리방법: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 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토지정책과(25042-608-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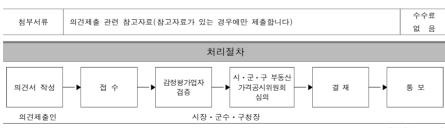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 견	주소					
제 출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소재지 및	지번				
대 상 토 지	지목					
포 시	실제이용상	황				
	열람지가		원/m²	의견가격 원/m²		
	의견제출사	ਜ ਜ				
의견제출 내 용						
내 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 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Person submitting opinion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Address & Lot No.									
Individual	Land Category									
Lot	Actual Use									
	Perused Pri	се	KRW/ m²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m						
Grounds	Reasons to	submit opinions								
for										
submitting opinions										
оринон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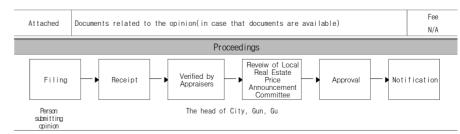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210mm×297mm(Woodfree Paper 80g/m²)

끝.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8. 30. ~ 2024. 9. 13. (14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사항

공고 기간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책과(☎042-608-5306)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16 -

붙임 공시송달조서

E 115111171 1154	Euglia 77		511171 F OL 7 4	111171 40 51
통보대상자 성명	통보대상자 주소	사유	대상건물의 주소	상세주소 부여 호수
최*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 로 ****번길 **, ***동 ***호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45 (목 상동)	201, 202, 203, 204 301,302,303,304 401,402,403
이*행	대전 유성구 배울*로 **, *** 동 ****호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84 (목 상동)	201, 202, 203, 204, 205, 206 301,302,303,304,305,306 401,402,403,404,405,406 501
구*자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 내북암길 **-*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86번길 190 (목 상동)	B101, B102, B103, B104 101,102 201,202 301
송*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동 ***호	이사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54번길 7 (중리동)	101, 102, 103 201,202,203 301,302,303
이*택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 **번길 **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31번길 99 (중리 동)	101, 102 201,202
김*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 로**길 **, ***동 ***호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번길 77 (오정 동)	101, 102 201
이*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번안길 **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번안길 14 (오정 동)	101, 102 2층
이*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번안길 *, *층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번안길 6 (오정 동)	1층 2층
임*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번길 **, *층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71 (중 리동)	101, 102 2층
엄*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번길 **-*, ***호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79-5	101, 102 201,202,203 301
유*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길 **, ***호	폐문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79-7 (중리동)	101, 102, 103 201,202,203 301
박*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 면 금평*길 **-*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1129번길 94 (중 리동)	101, 102, 103 201,202,203 30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893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시송달 공고 [용호천(II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용호천(II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나. 사업의 명칭 등

사업의 명칭	하천명 (등급)	사업예정지	목 적	공사개요	공사기간
용호천(II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용호천 (지방하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청룡교 ~ 용호동 무명2교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 3.1km	인가완료일 ~ 2027.12.

2. 관계서류 열람기간 : 2024.08.30. ~ 2024.09.20.(공고일부터 21일간)

- 3.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 가.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042-270-5664)
- 나.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하천담당 (☎ 042-608-5224)
-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1 참조
- 5.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참조
-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 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TO되기의 에OB 도시의 에크도시										
일				면?	적	토	지소유자		관계인		
련	"-		지	공부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조르	
번	소재지	지번	목	상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비고
호				(m²)	(m²)	명칭		명칭		내용	
1	대덕구 용호동	219	답	1,808	113	신순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동로7 번길 10 (신탄진동)				지분 1/2
2	대덕구 용호동	219	답	1,808	113	이상학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1로 139, 1804동 504호 (고운동,가락마을1 8단지)				지분 1/2
3	대덕구 용호동	215	답	177	13	박정순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48 (석봉동)				
4	대덕구 용호동	106-5	천	11	11	이상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356-2 백합연립주택 비동201호				지분4 4.8/4 65
5	대덕구 용호동	104-1	답	139	139	이상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51-4				
6	대덕구 용호동	105	답	2,26 9	15	송미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05 (상서동)				지분 1/2
7	대덕구 용호동	103-1	전	145	145	이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331				
8	대덕구 용호동	99	전	2,38 7	978	이연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555-35				
9	대덕구 용호동	114-2	답	227	13	송종남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9 건영아파트105동1 408호				
10	대덕구 용호동	67	전	461	41	강승원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75, 112동 1202호 (금암동,우림루미 아트아파트)				지분1 /3
11	대덕구 용호동	산8-1	임	3,15 7	157	송찬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0 신동아아파트2동7 06호				
12	대덕구 용호동	산2-2	임	28,5 62	12	이영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44길 13 에이동802호(석봉 동,유락아파트)				
13	대덕구 용호동	산1-1	임	78,2 24	28	진주강 씨강호 공종중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878-4				
14	대덕구 용호동	51-3	임	17,6 70	610	진주강 씨강호 공종중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89, 104동 1201호				

[붙임 2]

주민공람 의견서

				(No.)
공고내용	「용호천(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행정구역	대전 대덕구
0 11 9	사업인정에 된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명	ମାଫ ମାନ।
공람기간	2024. 08. 3	30. ~ 09. 20.		
의 견	성 명		생년월일	
제 출 자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핸.	드폰 :)
제 목				
해당지번				

024.	
.UZ4.	

의견제출자 : (서명)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88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2024. 3. 5.)으로 보안업무 대상 공공기 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이 추가되면서 위임 사항 및 사이버보안 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사이버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을 규정함 (안 제3조).
- 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마.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민원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전화: 042-608-6083, FAX: 042-608-3825, E-mail: gowls3361@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정보과 담당자 (전화: 042-608-6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 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감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 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 4. 사이버보안 교육
- 5. 사고대응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 7.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 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혐회는 제외하다.
-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 치된 국립·공립 학교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목개정 2024. 3. 5.]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O 성 명:

O 생 년 월 일:

O 주 소:

O 연 락 처:

O 의 견: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4 - 89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인구감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금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출생가 정에 아이 탄생에 대한 축하와 출생에 대한 양성평등적인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 경합(안 제명).
- 나. "출산"을 "출생"으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용어 및 명칭을 각각 변경하여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가족친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가족친화과

(전화: 042-608-6784, FAX: 042-608-3836, E-mail: madlifelg@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FAX, 이메일 제출 시 042-608-6784로 연락 바람.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친화과 담당자 최유 리(전화: 042-608-67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율"을 "출생률"로, "출산을"을 "출생을"로,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출생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산장려금"이란"을 ""출생축하금"이란"으로, "출산을"을 "출생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출산장려 지원)"을 "(출생장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산 장려"를 "출생 장려"로,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7조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을"을 "출생축하금을"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현황

(동)

								(ょり
	신생아	또는 영아	의 부모 또는	는 보호자	신생이	- 또는 영아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주 확인 여부	성명	생년월일	출생신고 일	신청서 접수일	구청 송부일

출생축하금 지급대장

od vil	신생아	또는 영아의 보호자	신생이]생아 또는 영아		기스 Al	71 7 61	확인	환수사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십구일	지급일	(서명 또는 인)	및 일자

신・구조문대비표

2 , 2	, , ,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출산율</u> 저	제1조(목적) <u>출생률</u>
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	
처하고 <u>출산을</u> 장려하기 위하여	<u>출생을</u>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	출생가정에 대한 출생축
<u>려금</u> 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u>하금</u>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출산장려금"이란</u> 신생아 또	3. <u>"출생축하금"이란</u>
는 영아의 <u>출산을</u> 축하하기	출생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
<u>산장려금</u>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u> 생축하금</u>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	
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u>(출산장려 지원)</u> 구청장은	제4조 <u>(출생장려 지원)</u>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제3조에 따	출생 장려
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출생축하금</u>
제5조(지원신청 등) ① <u>출산장려</u>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
<u>금</u>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	글
라 한다)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	,
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	
이 된다.	
② 출산장려금 지급은 부모 또	② 출생축하금
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	⑤ 출생축하금
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생 략)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	②
과 제3조의 <u>출산장려금</u> 지원대	출생축하금
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	
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	
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닥 5일까지 대저광역시 대	

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례 시행 후 국가 또는 대전광역 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 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 --- 출생축하 금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 제8조(환수조치) ① -----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 ----- 출생축하 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② -----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 ----- 출생축하금 지 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9조(대장비치 등)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신 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 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 ----- 출생축하금 지급대장

관계법령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	안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O 연 락 처:

O 의 견: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